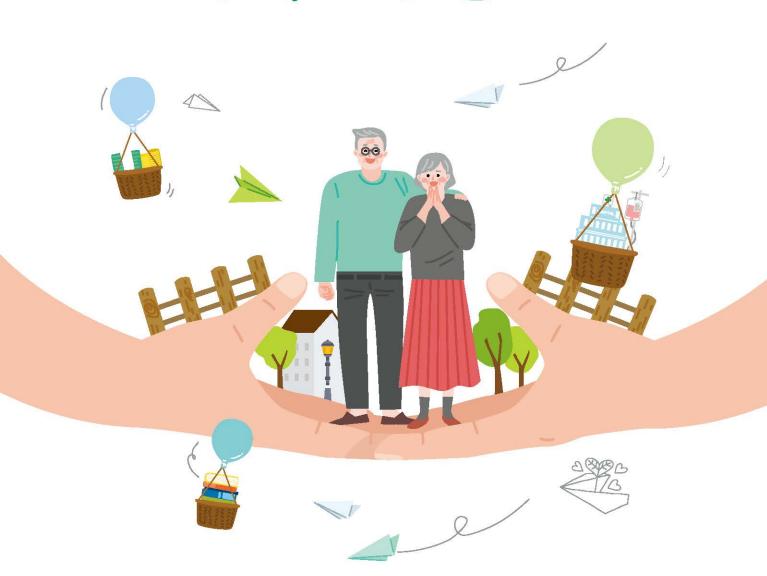


# え ロー ステナス・111









# 이 한눈에 알아보는 치매 서비스







# Good! 바로 알고 이 캐카는 치아









# 02 치매 예방을 위한 서비스

# 1

## 치매조기검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및 치매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하여 치매 유병률 감소와 치매를 예방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치매선별검사 : 대상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 내용 – 치매안심센터에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 평가
- 치매진단검사: 대상 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내용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에서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료
- 치매감별검사: 대상 치매진단검사 상 '치매'로 판정된 자 내용 - 치매안심센터 협약 병 · 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및 뇌영상촬영(CT, MRI)를 통해 치매 원인 질환 평가
- 신청기관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문의전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보건복지콜센터(129)

# 2

# 치메예방관리(치메예방교실/인지강화교실)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제공

- 치매예방교실 : 대상 지역 주민 내용 - 치매예방 프로그램 안내 및 정보 제공
- 인지강화교실: 대상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으로 등록된 자 내용 – 인지강화 프로그램 제공 <mark>※일정 및 프로그램 구성은 해당 치매안심센터에 문의</mark>
- 신청기관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문의전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03 치매환자를 위한 서비스

# 1

# 치매환자 쉬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낮시간 동안 보호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 및 사회적 접촉·교류 증진 도움

- 대 상: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장기요양 서비스 미신청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대기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 신청기관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문의전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2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증상 악화가 지연될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

- 대 상: 아래의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며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① 만 60세 이상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 치료, 소득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②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F00~F0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③ 치료 기준에 맞는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금액: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
- 신청기관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1부 (보호자 통장사본을 제출할경우, 대상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첨부), 당해 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처방전(질병 코드번호, 약품명 기재)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문의전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보건복지콜센터(129)

# 3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

- 대 상: 치매를 진단 받은 환자 중 보건소장이 치매관리를 위해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공내용: 위생소모품(기저귀, 방수매트 등), 조호기구(휠체어, 목욕의자, 욕창방지 쿠션 등)
  -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치매안심센터에 문의
- 신청기관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 문의전화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129)



# 4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나눠드려 실종되었을 때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대 상: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제공내용: 1인당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제공(무료)
- 신청기관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신청절차 : 치매안심센터 방문 →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 인식표 배부(무료)
- 제출서류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1부 대상자 반명함판 사진 1장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등
- 문의전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보건복지콜센터(129)



# 5

# 지문 등 사전등록





경찰청에 치매어르신의 지문과 사진, 기타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이용해 신속하게 발견 및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대 상: 본인 또는 가족(치매어르신 동반 필수)
- 신청방법 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와 보호자 함께 방문 등록
  - ②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립 앱을 통해 등록
- 제출서류 ①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할 경우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치매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 ② 치매안심센터 외에서 등록할 경우
    - 경찰청(182) 문의
- 문의전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경찰청(182) / 경찰서(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포함)

# 6

# 배회감지기 지원(GPS/매트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지원

- 대 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 시설급여(요양원 등) 이용 시 배회감지기 대여 불가
- 제공내용: 손목시계 또는 목걸이형 GPS 감지기 / 매트형 배회 감지기
- 신청방법 : 복지용구 사업소와 이용 상담 및 계약
-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보건복지콜센터(129)



#### 자세한 정보는 여기로 클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복지용구 사업소 및 배회감지기 정보를 찾아보세요!

# 기 치매공공후견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치매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보장

#### \* 성년후견제도?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

- 대 상: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 ②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③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 위 조건을 미충족한 자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 신청기관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문의전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 치매공공후견 서비스 이용절차





# 04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

# 1

# 치매가족 교육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에게 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

• 대 상: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신청기관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문의전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2 <del>à</del>

## 치매환자 가족모임(자조모임)



치매환자 가족 간 정서 및 정보교류를 통해 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 가족들의 정기적 모임 지원

• 대 상: 자조모임 참여를 희망하는 치매환자 가족

• 신청기관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문의전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자세한 정보는 여기로 클릭!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 → 지원 → 우리동네 가족모임에서 찾아보세요.

# 3

# 치매환자 가족 상담 & 돌봄 부담 분석



치매환자 가족 상담을 통해 가족이 느끼는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을 파악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

• 대 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제공내용: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고충상담, 가족 및 보호자 서비스 안내, 치매환자 돌봄 정보 및 치매서비스 안내, 심층 상담 후 돌봄 부담 분석 통해 적절한 가족 및 보호자 서비스 연계

• 예 약: 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

문의전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 전문적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문의전화: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052-716-7199)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052-292-2900)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052-227-1116)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052-233-1040)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052-288-0043) 울주정신건강복지센터(052-262-1148)

# 4 노인 장기요양 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대 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 장기요양급여
  - ① 재가급여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1일),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 ②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③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신의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

- \* 인지지원등급: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치매를 진단받은 노인 등
  - 치매진단: 최근 2년 이내 병원진료를 통해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보완 서류에 치매진단내역을 받아 제출
  - 장기요양급여이용: 주야간보호, 치매가족 휴가제 연 6일, 복지용구(연 160만원) 이용가능
-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인정조사→의사소견서 발급→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장기요양급여이용
-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
-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보건복지콜센터(129)

# 중증 치매 산정특례





중증 치매 산정특례로 등록할 경우, 중증 치매로 외래진료 또는 입원 진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 10%를 적용

- \* 산정특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
- 대 상: 이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단, 질환의 특성에 따라 연간 지원 가능 일수 변동 가능)
  - ①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에서 해당 치매상병으로 진단
  - ② 임상치매척도(CDR) 2점 이상 또는 전반적 퇴화척도(GDS) 5점 이상
  - ③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18점 이하
  - ※ 단, CDR 3점 이상 또는 GDS 6점 이상, MMSE 10점 이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질환별 산정특례 "필수검사항목"에 해당하는 검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질환으로 확진→진료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행→등록대상자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명 날인 후 병의원(ED) 대행신청) 또는 공단에 신청
-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 요양기관(치매 진단을 받은 병원)
-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보건복지콜센터(129)



어머니께서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은 집에서 요양중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난폭해지셔서 아버님을 밀어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게 하시고, 같은 아파트 노인분을 밀어 골절로 입원해 보상을 해드리는 등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요양병원으로 모시려고 하니 죄송스러워서 결단을 못 내리겠어요...

어머니께서 치매로 인해 정신행동증상이 심해지셨다면, <u>최매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를</u>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병원으로 모시면 집으로 못 돌아오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태가 호전되시면 언제든지 집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 6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 기관



치매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하여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 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대 상: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5등급(의사소견 제출)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단,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아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가능)
- 기관종류: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가·나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보건복지콜센터(129)

# 기 치매안심병동



전국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치료를 제공하여 치매 질환의 악화 방지 및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을 운영

- 대 상:치매환자
  - ※ 우선입원 대상: 급성으로 치매증상이 악화되어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자, 행동심리증상이 악화되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 섬망(급성혼란상태)이 동반된 치매환자
- 이용내용 : ① 입원환자 및 가족
  -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 인지치료, 회상치료, 감각치료, 운동요법 등
  -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② 퇴원환자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치매환자 거주지 이동지원, 거주지 환경개선 및 보조 장치 개선, 대상자 유선상담·방문간호·방문지도 제공,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치매안심센터 연계
  - 치매환자 가족 지원 및 치매인식개선교육
- 문의전화: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052-231-7900)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잠깐! 만약 치매환자를 마주쳤다면?

치매환자 실종신고 112



같은 장소를 배회하거나 혼짓말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거나 행색이 초라한 경우 등



**2** 치매환자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말을 걸어주세요.

Tip!

치애환자가 놀라거나 흥분하지 않도록 눈높이를 맞추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합니다.



**3** 현재 위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치매환자의 증상이 심각하다면 도움을 주세요.



치매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은 한번에 한가지씩, 쉬운 단어를 사용해 주세요.



↓ 치매인식표, 팔찌 등을 확인해 보호자/경찰청(국번 없이 112)에 연락하여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치매인식표는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옷에 신원을 확인할수 있도록 하는 인식표로, 옷 안쪽에 부착된 경우가 많습니다.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중구

052-290-4366

남구

052-226-2323

동구

052-209-4060

サマ サマ

052-241-8257

울주

052-204-2878

#### 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44456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40 동강병원 남관 6층 https://ulsan.nid.or.kr







